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80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8.

발 의 자 : 박수영 · 이인선 · 서천호

김재섭 · 최은석 · 이종배

곽규택 · 윤영석 · 권영세

박준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익법인에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“주식등”이라 함)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%를 한도로 해당 주식등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고, 특례로서 해당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, 자선·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불산입 한도를 20%로 상향하고 있음. 반면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불산입 한도를 5%로 제한하고 있음.

그러나 해당 불산입 한도 및 의결권 제한으로 인하여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유인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음. 또한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에 공익법인을 통한 대주주의 경영지배 및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불산입 한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, 「공익신탁법」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%로 하고, 공익법인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5%로 하되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해당요건을 만족하면 상향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).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나목 또는 다목”을 “라목”으로, “100분의 20”을 “100분의 50”으로 하고, 같은 목 2) 중 “자선·장학 또는 사회복지”를 “「공익신탁법」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다목(종전의 나목) 중 “공익법인등”을 “경우로서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”으로 한다.

나.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만 행사하는 공익법인등(라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): 100분의 15

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6호 및 제8호”를 “제6호, 제8호 및 제9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나목 및 다목”을 “라목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(같은 호 라목에 해

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)이 해당 요건을 위반하여 출연받은
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에 관한 적용례)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가.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
공익법인등(나목 또는 다
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
은 제외한다)에 출연하는
경우: 100분의 20

1) (생략)

2) 자선·장학 또는 사회
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

<신 설>

나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
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
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
단(이하 “상호출자제한기
업집단”이라 한다)과 특수
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:
100분의 5

가. -----
-----라목-----

-----100
분의 50

1) (현행과 같음)

2) 「공익신탁법」 제2조
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사업을-----

나.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
권을 「독점규제 및 공정
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5
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
항에 대하여만 행사하는
공익법인등(라목에 해당하
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
다): 100분의 15

다. -----

-----경우로서 가목
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
니하는 공익법인등-----

